■ 해양경찰수사규칙 [별지 제47호의6서식] <개정 2026. 10. 2.>

소속관서

구속영장 집행 결과

【피의자 심문 구인용】

발 부 법 원				
영 장 번 호				
영장의 법원 발급 고 유 번 호				
죄 명				
피 의 자	성 명		직 업	
	주민등록번호		국 적	
	주 거			

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발부된 위 구속영장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였습니다.

집 행 방 법	[] 출력서면 집행 여부(출력일시:) *법원이 출력하여 교부한 영장은 기재 불요		
집 행 일 시	20 . . . :	집 행 장 소	
집행불능사유			
처리자의 소속관서, 관직			
처리자 성명		처리자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	
유치희망장소			
경 유			

주: 1. 소속관서란에는 영장을 집행한 처리자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하고,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더라도 기재사항의 원본성에 대한 전자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경유 기관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2.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 결과가 전자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 영장에 포함된 정보인 전자문서의 법원 발급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
3. 위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, 처리자는 전자서명 대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
4. “유치희망장소” 란에는 집행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장소를 참고적으로 기재할 수 있고, 해당 기재에 관한 전자서명 또는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5. “경유” 란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, 본 서류가 검사를 경유하여 제출되는 경우에 검사 경유 확인 여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